

【조 약】

- 조약제2340호(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협정)..... 4

【대 통 령 령】

- 대통령령제27797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9
- 대통령령제27798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 대통령령제27799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3

【부 령 령】

- 교육부령제117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5
-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3호(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 39
- 국토교통부령제389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0
- 국토교통부령제391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7
- 국토교통부령제392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80
- 국토교통부령제396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1
- 국토교통부령제397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03
- 국토교통부령제398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05
- 국토교통부령제399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39
-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6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39
- 국토교통부령제40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56

【고 시】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7-6호(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157
- 외교부고시제2017-892호(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이집트 나흐하마디-룩소르 구간 철도 신호시스템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158
- 법무부고시제2017-24호(귀화허가)..... 162
- 행정자치부고시제2017-4호(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165
- 환경부고시제2017-13호(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 167
- 환경부고시제2017-14호(낙동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167

(이면 계속)

○국토교통부고시제2017-36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6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0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	16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2호(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등).....	170
○국토교통부고시제2017-4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17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0호(건설신기술 지정)	17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1호(보급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화성동탄2지구 A-89BL>).....	17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2호(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화성동탄2지구 A-89블록>)	17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5호(수문조사 업무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	1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6호(상주합창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7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6호(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운영기관 지정).....	1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67호(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 운영기관 지정)	18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1호(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일부개정)	182
○산림청고시제2017-6호(보전산지 지정)	185
○산림청고시제2017-7호(보전산지 변경지정)	186
○산림청고시제2017-8호(보전산지 지정해제)	187
○산림청고시제2017-9호(2017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	18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3호(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4호(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 H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9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5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40차>)	19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7-6호(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34차> 승인) ...	269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1호(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계획 변경).....	33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8호(하천점용 허가)	34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49호(하천점용 허가)	34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8호(하천점용 허가)	3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19호(하천점용<변경> 허가)	346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7-4호(비행장<옥상헬기장> 설치허가).....	346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항로표지 기능정지).....	347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사설항로표지 신설).....	348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일시철폐>).....	3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2호(하천수 사용허가)	348
○금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3호(실시계획 인가)	34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5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34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6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349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7호(하천수 사용허가<기간연장>).....	35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1호(하천수 사용허가)	35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2호(하천수 사용허가)	352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7-3호(하천수 사용허가)	352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13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353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8호(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53
○국민안전처공고제2017-19호(승강기 제조·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354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0호(유전자변형식품 승인)	355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2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355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356
○행정자치부공고제2017-3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6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7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7호(2017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용자사업 집행계획)	358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4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8호(신기술 지정 신청)	3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360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0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36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1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36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2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36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93호(신기술 지정 신청)	364
○국세청공고제2017-2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5
○관세청공고제2017-8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6
○산림청공고제2017-1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68
○병무청공고제2017-5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368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6호(지리적표시 등록)	38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7-7호(지리적표시 등록)	382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1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38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5호(차량 운행 제한)	384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6호(도로사용개시<조기개통>)	384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7-4호(시정권고 재결)	385
○청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공시송달)	385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공시송달)	386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공고제2017-54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391
○강원도공고제2017-69호(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391

【상 훈】

○서훈(환경부·서울특별시)	392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	402
-----------------------------	-----

●보건복지부공고제2017-24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로 지정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 : 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1, 2538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8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지에스아이엘(이정우) ② 두산건설(주)(이병화) ③ (주)한라(정몽원, 박철홍)

나. 전화번호 : ① 070-7574-1728 ② 02-510-3272 ③ 02-3434-5494

2. 명칭 :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시스템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터널 / 터널구조 및 설계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터널 및 지하구조물 공정에서 근로자 위치측위를 기반으로 안전한 터널 공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이다. 터널공사현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는 근로자 위치측위 장비, 터널 근로자를 위한 착용형 장비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다양한 터널 공정별 작업 순서와 터널 공정상황에 기반한 위험예측 분석을 통하여 터널공사의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

<범위>

실시간 터널작업 공정분석에 기초한 위험성평가 및 위험예측을 구현하기 위하여 터널근로자 식별을 위한 착용형 장비, 터널내부에 설치되는 무선신호 송수신 및 터널 내 환경정보획득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터널근로자 출역상황, 현재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 위험성평가를 위한 시스템 및 터널 내 근로자 위치 및 작업 현황파악을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전 관리 기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7-8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56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